

의제 21 (Agenda 21) 국가실천계획

21세기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위한 실천강령인 의제21(Agenda 21)은 전통적인 오염방지 수준의 환경문제를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관점에서 출발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향 선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이해관계의 대립, 즉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는 현실을 뛰어 넘지 못하는 실리쪽으로 가닥을 잡아온 것이 사실이었다.

선진국은 선진국 나름대로의 과거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발생한 전지구적 오염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후진국의 환경보전노력을 지원할 용의가 있으나 후순에게 물려줄 환경에 대한 협력은 전적으로 선·개도국의 공동책임임을 밝히고 있으며, 개도국 또한 일차적 책임을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 우선정책을 추구한 선진국에 있다고 규정하고 환경청정기술 및 대체물질 기술개발 등의 무상이전과 재정지원을 요구하는등 서로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인간환경선언이 채택된 이후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 : United Nations Conference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서는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원칙성명과 함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함께 이의 세부실천과제로서의 의제21(Agenda 21)을 채택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은 1983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전지구적 주요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development)의 설립결의와 함께 1987년 3월 동 위원회가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기본전략을 담은 보고서인 "Our Common Future (우리공동의 미래)"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WCED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현재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개의 상충된 이슈를 모두 충족시키려는 취지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살수 있도록 담보하는 범위에서 현재대가 환경과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의제21은 눈앞에 다가온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전지구적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지켜나아가야 할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기초규범으로써 아래와 같이 전문 및 4개의 부분(사회경제, 자원보전 및 관리, 주요그룹의 역할강화, 이행수단)등 총 40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1〉 의제 국가실천계획각 장별주제 및 소관부처

각 장 별 주 제	주 관 부 처
제1장 : 전문	
제1부 사회경제부문	
제2장 :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재정경제부
제3장 : 빈곤퇴치	보건복지부
제4장 : 소비행태의 전환	재정경제부

리포트-1

각 장 별 주 제	주 관 부 처
제5장 : 동태적 인구문제와 지속가능성	보건복지부
제6장 : 인간보전의 보호증진	보건복지부
제7장 :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개발증진	건설교통부
제8장 : 의사결정의 환경과 개발의 통합	환경부
제2부 자원의 보전 및 관리부문	
제9장 : 대기보전	환경부
제10장 : 토지자원의 통합적 기획 및 관리	건설교통부
제11장 : 산림황폐 방지	산림청
제12장 : 사막화 및 한발퇴치	산림청
제13장 : 지속가능한 산지개발	산림청
제14장 :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	산림청
제15장 :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부
제16장 : 생명공학의 환경안전관리	과학기술부
제17장 :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 보호	해양수산부
제18장 : 담수자원의 질과 공급보호	환경부
제19장 :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안전관리	환경부
제20장 : 유해폐기물의 불법교역방지 및 환경안전관리	환경부
제21장 : 고형 및 하수폐기물의 환경청정관리	환경부
제22장 : 방사성 폐기물의 환경안전관리	산업자원부
제3부 주요그룹의 역할강화부문	
제23장 : 전문	
제24장 : 지속적 균형발전을 향한 여성활동	여성특별위원회
제25장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동과 청소년의 역할	문화관광부
제26장 : 원주민과 원주민공동체 역할의 인식강화	외교통상부
제27장 : 민간단체의 역할강화	환경부
제28장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	환경부
제29장 :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강화	노동부
제30장 : 산업계	산업자원부
제31장 : 과학기술계	과학기술부
제32장 : 농민의 역할강화	농림부
제4부 이행수단부문	
제33장 : 재원 및 재정체계	재정경제부
제34장 : 기술이전·협역과 능력배양	환경부
제35장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	과학기술부
제36장 : 교육, 홍보 및 훈련	환경부
제37장 : 지속가능한 개발능력 확충을 위한 국내체계와 국제협역	환경부
제38장 : 지구환경보전 국제제도와 장치	외교통상부
제39장 : 국제법적 장치 및 체제	외교통상부
제40장 :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환경부

리포트-Ⅱ

이와같이 의제21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구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적 문서이다.

하지만 이처럼 아무리 훌륭한 계획과 강령이라 하더라도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실천하고 이행할 추진기구가 없다면 무용지물의 문서가 되기 때문에, 유엔은 『의제21』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3년 경제사회이사회(ECOSOC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산하에 지속개발위원회(CSD : Commissi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설치하고 글로벌 시대의 환경문제에 대한 총괄적 관리를 구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93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CSD회의에 참가하여 의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정책추진현황과 향후방향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오고 있는데, 지난 '98년 11월에는 의제21과 관련한 각국의 실천기구의 상존여부, 관련법 및 프로그램의 유무, 현재의 정책추진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한바 있다.

의제21(Agenda 21)은 전지구적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인 실리를 찾는 즉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21세기의 가장 기초적인 규범으로서 향후 국제무대의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위상을 확립하는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길이며 방법이다.

하지만 국내의 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의제21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총괄조정기구의 결여로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및 조정에 한계를 들어내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으로 지속개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대국민 홍보와 교육결여로 이어져, 의제21 이행은 커녕, 심지어는 정부관계자들도 그 내용을 몰라, 정책 입안시 환경적 측면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제적인 합의서와 같은 의제21 국가보고서를 대다수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채, 몇몇 정부 담당자들에게 의해 작성된 보고

서가 매년 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환경부는 얼마전 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의제21 국가실천계획 이행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의제21에 대한 총괄기구인 지속개발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와는 별도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제환경협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매년 100회 이상식 개최되고 있는 국제환경회의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연구하는 지구환경연구센터의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분야별 추진실적평가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산·학·연·관이 참석하는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추진 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결과를 대외에 공표할 방침이며, 분야별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 지표의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의제21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강령이나 규범이라는 딱딱한 것이 아니라 '70년대 새마을 운동과 같이 전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운동의 성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야기 있다. 다행히도 '98년 12월 현재 전국 248개 자치단체중 54개 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21을 수립하였으며, 78개 자치단체에서 수립중이다.

〈최화봉 기자〉